

제2664호
2019. 6. 17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 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
 전화: 3396-4955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고 시

제2019-73호 : 세운3-4, 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2
 제2019-74호 : 세운3-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3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
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73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16.10.26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1호(2017.1.26.)로 구역통합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38호(2017.11.3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185호(2019.6.7.)로 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58호(2015.07.30.) 세운3-4구역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59호(2015.7.30.) 세운3-5구역 사업시행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25호(2018.3.16.)로 세운3-4,5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116호(2018.3.13.)로 관리처분인가된 세운3-4,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 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9년 6월 1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: 재개발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 재개발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-4번지 일대/ 6,987.24㎡
4. 사업시행자
 - 성명 : 국제자산신탁(주) 대표 이창하
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. 20층 (삼성동)
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
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년 7월 30일
7. 주요 변경내용
 -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(더센터시티주식회사→국제자산신탁(주)) 및 규약변경
 -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
 -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증가 76,433.0908㎡ → 76,348.7588㎡ (감 84,3320㎡)
 - 단위세대 내부 평면변경 및 전용면적 변경
 - 임대주택 건립계획 변경 (58세대→61세대)
 - 부대복리시설(경로당, 작은도서관, 어린이집, 주민공동시설) 평면변경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대지면적 (㎡)	층수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건축계획		비고
						전용면적	세대수	
5,452.21	지하8층 지상27 층	76,348.7 588	62.14	923.44	89.93	전용 40㎡미만	52	
						전용 40㎡이상 ~ 60㎡미만	556	
						전용 60㎡이상	-	
						총 계	총 608세대	

9. 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정비기 반시설	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		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
	종류	규모 (㎡)	종류	규모 (㎡)	시행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정비기 반시설	도로	769.8㎡	도로	1,331.72㎡	국제자산신탁(주)	시행자 설치 후 무상귀속
			공원	203.31㎡	국제자산신탁(주)	시행자 설치 후 무상귀속
	합계	769.8㎡	합계	1,535.03㎡	국제자산신탁(주)	시행자 설치 후 무상귀속

10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3)에 비치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74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16.10.26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85호(2019.06.07.)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113호(2015.12.28.) 사업시행인가 처리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24호(2018.03.16.)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115호(2018.10.26.)로 관련처분인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9년 6월 17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: 재개발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재개발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89-1번지 일대/ 4,729.71㎡
4. 사업시행자
 - 성명 : 국제자산신탁 대표이사 이창하
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, 20층 (삼성동)
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년 12월 28일
7. 주요 변경내용
 -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(더 센터시티(주)→국제자산신탁(주)) 및 규약변경
 -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
 -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경(53,475.51㎡→52,305.70㎡, 감 1,169.81㎡)
 - 단위세대 내부 평면변경 및 전용면적 변경
 - 부대복리시설(경로당, 입주자집회소, 작은도서관, 어린이집, 지하주차장) 평면변경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(변경)

대지면적 (㎡)	층수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건축계획		비고
						전용면적	세대수	
3,711.96	지하8층 지상26층	52,305.7053	51.52	896.31	89.98	전용 40㎡미만	-	
						전용 40㎡이상 ~ 60㎡미만	390	
						전용 60㎡이상	-	
						총 계	총 390세대	

9. 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(변경)

정비기 반시설	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		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
	종 류	규 모 (㎡)	종 류	규 모 (㎡)	시 행 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정비기 반시설	도 로	501.47㎡	도 로	1,017.76㎡	국제자산신탁(주)	시행자 설치 후 무상귀속
	구 거	36.80㎡	-	-	-	-
	합 계	538.27㎡	합 계	1,017.76㎡		

10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3)에 비치